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77 (2022. 8. 29 ~ 9. 2)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인프라테크	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 통행이 가능한 배송로봇의 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
	기업송무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 계류안	ESG	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가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 부여, 에너지 사용량 중 일부는 분산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 택지·도시 개발 사업자가 의무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공포 법령	건설/부동산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단지 내 원활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존 공원·녹지의 보존을 위해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존치시설에서 제외.
입법/ 행정예고	공정거래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원사업자가 원재료 물가와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 감경.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까지 수준 높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산업의 발전 및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러한 로봇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통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이에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제2조제21호의3,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등).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H2T0A8V0R5S1W6W3H8W1N2J6H1Z3	한국경제 22.08.25. "국회서 법안도 배달하는데"… 자율주행로봇 인도 통행 가능해질까 [입법 레이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257481i	22.08.25.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에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조사에 따라 결함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자동차들은 최대 배터리 충전 용량에 제한이 발생하였고, 차주들은 광고·설명 등을 통해 고지받았던 차량의 최대 주행가능거리보다 성능이 떨어진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차량 성능 저하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T2J0Q8Y1A8X1Y0G4R1N5J2Y5Z6M6	파이낸셜뉴스 22.08.26. 車 주행거리 뻥튀기·리콜 후 성능 저하 적발땐 경제보상 https://www.fnnews.com/news/202208251125514273	22.08.24.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라.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전망 접속지연, 출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하고, 배전사업자에게 망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머니투데이 22.08.26. '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왜 수도권에만?…"IDC 지방 분산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513290775069	21.07.27. 제안 21.09.0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2.01.05. 소위 상정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바.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사.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안 제22조). 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L1C0X7R1X5V1J5C2W2U1R3Z9P4C2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설부담금 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물류단지 내 원활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존 공원·녹지의 보존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존치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공성이 낮은 공장,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https://www.law.go.kr/법령/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2.08.24. 일부개정 22.08.24.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조정대행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며, 중소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작아 법위반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정액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는 원사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안 제6조의5) 1) 개정법이 위임한 입찰결과 고지 대상 공사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받는 건설공사로 규정함. 2) 입찰결과 고지는 개찰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알릴수 있도록 함. 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안 제8조의2) 1) 공시대상 기간(반기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6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2) 공시대상 항목에 관해서는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지급된 금액, 지급기간별 지급된 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함.	동아일보 22.08.26. '하청업체 기술 유용' 과징금 10억→20억원으로 상향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5/115151732/1	22.08.25. ~ 22.10.04.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다.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및 공시 의무 관련 과태료 규정(제18조, 별표4 및 별표5) 1) 건설하도급대금 입찰결과 공개 위반 1회마다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미공시에는 5백만원, 공시기한 전(후) 공시하였으나 주요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시 2백만원(2.5백만원), 주요 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하였더라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보완한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제6조 제1항 제7호 다목, 제9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 1)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절차·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서류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의 조정신청자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고, 조합의 대행신청절차 및 중앙회의 서류제출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중앙회 조정결렬시 분쟁조정 신청사유에 추가함. 마.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제13조의2) 1)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10억 원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함. 2) 그 외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바.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별표 2)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작아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억원으로 상향 규정함. 사.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별표 3) 연동계약 체결실적 및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656?pageIndex=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서울신문][기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지 않을 것"(2022.08.3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31500162&wlog_tag3=naver

주요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당초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오는 10월 중에 사고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함.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키를 잘 잡아야" (2022.08.3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307818i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도 미동도 없던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최고경영자와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 9조는 재해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조항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고 함.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상의 조치인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와 최고경영자가 의무이행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라는 것. 현재로서는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의 형량을 논하기보다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의 인과성, 구체성, 명확성, 책임성 등을 따져보아야함. 중대재해 Zero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업장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똑같이 관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과 절차서에 담아 관계법령 관리상의 조치를 절차서와 지침서에 담아야함. 그리고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었는지 이행점검하고 현장분석을 통해 시정조치하며 반복하여 교육훈련하여야 함.

[매일경제][사설] "중대재해법은 잘못 출제한 시험" 기업은 얼마나 괴롭겠나 (2022.08.29.)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8/760539/

주요내용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보니 산업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지적임. 중대재해법을 '잘못 출제한 시험'에 비유하며 문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고 기업들이 노력해도 산업 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으로 바꿔야할 상황에 대해 모호한 상태임.

[한겨레][사설] 중대재해법 무력화 앞장, 기재부가 재계 민원 통로인가 (2022.08.25.)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6234.html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내용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단, '경영책임자 처벌'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 경영자가 스스로 위험을 줄일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게 이 법의 취지이며 중대재해법의 핵심임. 기재부는 '노사 관계 정책 협의·조정 업무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수 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인프라테크팀,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